본 판결문은 판결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49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시 ○○청장

변 론 종 결 2017. 2. 9.

판 결 선 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5. 27. ○○구 D 102동 17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 합계 18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 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5,400만 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25. 위 3인이 각자 취득한 지분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합계 1,800만 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들이 당초 적용한 1천분의 30의 세율이 옳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준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하면서 제10조의 과세표준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 본문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므로,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제10조 제1항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별 취득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위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그에 따른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법률의 명시적 규정도 없이 함부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용인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2015. 7. 24. 개정되면서 후문으로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법률 규정의 흠결을 입법으로 보완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의제적 규정인 만큼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15. 7. 24.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선 정 자 목 록

1. A

2. B

3. C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